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
관한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김 기 창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3월 3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3월 3일

3. 제안이유

도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소방정책의 추진과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소속하에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
다.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행정관청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는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, 그 성격상 도민의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의사결정권자가 위원회를 통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구하기 위함이며, 소방발전위원회의 결정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음을 고려

할 때,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○ 조례 제정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펴보면,

- 도민에 대한 소방서비스 향상과 효과적인 소방정책 추진을 위하여 소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과 제116조의2,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80조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므로 조례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..

○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소속하에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3조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4조 및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위원의 자격 및 임기, 제척·기피·회피, 추천 및 위촉, 해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○ 입법예고('22. 3. 7.~'22. 3.14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○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, 기타 “**특이한 사항**” 은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○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도민에 대한 소방서비스 향상과 효과적인 소방정책 추진을 위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소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